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666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림, 김경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

피고, 항소인 A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24. 선고 2020가단3795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N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503,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B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사해행위(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의 주체인 채무자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20. 4. 2. 내려진 사실(울산지방법원 2019개회9693호, ‘이하 관련 개인회생 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관련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채권번호 10)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위 개시결정 이후인 2020. 8. 1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채무자 B가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9. 5. 28.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B가 스스로 부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인 2021. 4. 1.까지 부인권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향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 사건 소는 소급하여 적법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적법한 이 사건 소가 소급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원, 판사 진민희, 판사 김민정

